

산업보건관련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지난 3. 23 당 협회 주관아래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3. 7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부에 건의하고자 15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제도 및 정책개선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 의견들을 요약하여 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을 본 호에 게재한다.



◇ 개정안 요약 및 검토의견 발표 :

- ◇ 지정토론자 :
- 이 경 남(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본부장)
- 박 정 구(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과장)
- 김 양 호(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 역학조사 센터 소장)
- 엄 용 태(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 소 교수)
- 노 재 훈(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 소 교수)
- 김 광 종(한국산업위생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 관련

가. 정기(일반·특수)건강진단을 주기적인 건강진단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 정기적이란 용어는 법 제43조에 규정된 용 어로서 일정한 시기(기간)를 의미하며, 주 기적이라 함은 일정한 간격을 갖는 의미이 므로 일반건강진단은 종전대로 정기건강진 단으로 하고,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주기적으 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건강진단의 종류와 정의에 대하여

○ 채용시 건강진단은 법 제43조에 명시된 것 이나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용어는 법에 근 거하지 않으므로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통일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다. 수시건강진단 제도 신규도입에 대하여

○ 시행상의 어려움에 비하여 실익의 확보가 의문시되며 건강진단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시행상 혼란 이 우려되는 동시 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

지 않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공히 수시건강진단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별도 도입을 반대함.

○ 수시 건강진단 제도를 경견완장해 등을 포함 시켜 우선 지침으로 시행하고 이후 법규에 반영.

라. 특수건강진단 주기완화에 대하여

○ 분진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후 이상이 없으면 3년 이내에 배치후 첫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 매년 1회, 소음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후 2년 이내에, 배치 후 첫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요망됨 아울러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단축 기준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으로 생각되므로 특수건강진단 주기 완화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 기준 이상·미만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검증을 한 후 주기 단축·완화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단축기준을 노출 기준의 50%로 하는거나 현행대로 타당함.

○ 일반사무직의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2년임을 감안할 때 생산직(유해부서) 근로자에 대한 일부유해요인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년 1회로 하는 것은 적당치 못함, 특히 특수건강진단 항목에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항목이외의 일반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특수검진주기가 길어지는 경우 다른 질병의 조기 발견도 시기를 놓칠 수 있음.

○ 현재 유해부서에 대한 측정 수수료는 3인 수행시 약 50만원이고, 일반 검진비는 20만원이며 특수 검진비는 1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건강진단 팀 참여인력 (약15명)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과 같이 특수건강

진단 대상자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주기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 현재의 특수건강진단 수수료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마. 기타사항

○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산재 예방기금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시 사업주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 완화가 필요.

- 의료기관의 직업병 유소견자 보고는 화학물질에 의한 희귀 직업병 등을 중심으로 대상 직업병을 열거하고 그 외의 난청, 진폐증 초기 소견자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요망.

○ 특수건강진단 기관 신규 지정의 억제 및 안정적 운영 보장 요망.

2.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관련

가. 정도관리 주기완화에 대하여

○ 정도관리 합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주기를 현재 연2회에서 연1회로 완화 요망.

나. 노출기준의 행정적 활용에 대하여

○ 시료포집 및 분석오차가 반영된 “측정농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노출기준 적용 이전에 분석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다. 작업환경측정 대상확대에 대하여

○ 현재 옥내 작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옥외까지 확대하고 중점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별도 지침화(작업환경 관리, 건강관리 등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라. 대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별
산업보건 분석실 설치 운영**

○ 모든 지정 측정기관에 AA·GC등 법정방비를 구비하여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지정측정 기관간에 시료 분석 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마.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따른 자격별 기준 관련(규칙 별표 5의2)

○ 사업장수 360개소 이상의 인력 기준중 산업기사는 산업위생관리기사로 하는 것이 타당.
○ 사업장수 600개소 이상에만 기술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480개소 이상에서도 둘 수 있도록 인력기준 강화 요망.

바. 기타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공학적 개선 확행 필요(기술사의 적극 활용)
○ 작업환경 양호 사업장(측정주기 완화 업체 등)은 산재 보험료의 개별 실적 효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작업환경측정법의 제정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 수수료의 제3자 지불제 도입.
○ 작업환경측정 기술 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 설정이 필요함.

3.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건관리 대행 제도 관련

가.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개정안 제 17조)

○ 사업주는 보건관리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를 종전과 같이 보건관리자가 수행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 것이 타당함.
○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 전공의를 지정의사(보건관리대행기관)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나. 보건관리 대행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행지역 명시시 2개 기관 이상이 중복 지정되어 상호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요망됨.
○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제4호 “보건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종전과 같이 산업보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환원 요망.
○ 보건관리 대행기관 협의회 설치 근거를 규칙에 반영 요망.
○ 보건관리 대행시 일반·특수검진과 작업환경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위탁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관리대행 인력기준중 다목 및 라목이 합해지는 경우 산업위생기사 1급의 활용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다목 및 라목을 구분 하는 것이 타당함.

